



제7장

노동쟁의

조선전업주식회사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조정판정 실시에 관한 건
대한방직 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에 의한 건의 이송의 건
각 탄광노조의 노임인상 투쟁에 대한 최근 동향에 관한 건 보고

근로쟁의 발생에 관한 건

노동쟁의 발생에 관한 건

대한노총 광산연맹 대한석탄광노동조합연합회의 성명서에 관한 건

탄광 총파업 선언문

각 광업소 쟁의행위(파업) 종결 보고의 건

쟁의행위(파업) 경과 보고의 건

영월광업소 파업에 대한 통신보도에 관한 건

영월광업소 파업 관계 보고 전보

임금인상에 관한 건

철도노동쟁의 경위보고에 관한 건

철도노동조합연맹에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건

철도노동쟁의 종결을 위한 현업수당 지급의 건(안)

전국 항만 하역 노무자 임금인상 노동쟁의 처리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쟁의 경과보고

노동쟁의 발생 상황보고

전국외기노조의 퇴직금 쟁의

조선전업주식회사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조정판정 실시에 관한 건

법무부 / 1949 / BA0607384

1949년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이 사회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로, 정부 소유 관할의 귀속기업체인 조선전업주식회사에서 일어난 노동쟁의사건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이다. 사회부 장관이 조선전업주식회사 사장에게 보낸 〈조선전업주식회사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조정판정 실시에 관한 건 통고〉, 5월 13일, 14일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조선전업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판정 심사에 관한 건〉, 5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조선전업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판정 심사에 관한 건〉, 5월 9일 사회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조선전업주식회사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조정판정 실시에 관한 건 의뢰〉, 1949년 중앙노동조정위원회 판정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조선전업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정부가 소유하고 관할하게 된 귀속사업체 중의 하나였다. 해방 후 조선전업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윤일중이 1948년 10월에 상공부 전기국장으로 전임하면서 1949년 1월 5일 서민호가 제2대 사장으로 취임했다.¹⁴⁶⁾ 조선전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1948년 12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최용수, 김문규, 이원목, 손양렬, 금만영, 백영규 등이 모여 조합 결성에 합의했다. 이들은 해를 넘겨 1949년 1월 6일 전업노조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 결성 작업을 본격화했다.

다음날 회사 측은 노조 결성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전업노조 결성준비위원회 측에 통고했다. 그 반대 이유는 조선전업이 귀속사업체이고 국책회사이기 때문에 사원은 준공무원으로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⁴⁷⁾ 이후 회사 측은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공작을 여러 각도에서 전개했다. 그러나 조선전업 노동자들은 이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1949년 2월 12일에 이르러 조선전업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었다. 결성대회에서 최용수가 위원장으로, 김문규·김선경·이지목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46) 「電業 新 社長 就任式」, 『동아일보』 1949.1.8.

147) 조선전업노동조합, 『전업노조 10년사』, 1959, 168~170쪽.

이때부터 노동조합 수호를 위한 지난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회사 측에서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근시키거나 해고시켰다. 또한 대한노총 본부와 사회부 노동국에서 전업노조 인정을 권유했는데도 이를 일축했으며, 2월 20일에는 상공부 차관을 통해서 국무회의에 노조 결성 불허를 건의하는 등 노조 파괴공작을 전개해나갔다. 이에 맞서 대한노총은 2월 24일 ‘대한노총 조선전업 노동조합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민호 사장에게 경고문을 보냈다. 전업노조 측에서도 2월 25일 “비민주적 처사를 즉시 취소하고 사장의 양심적 자기비판과 반성의 기회 있기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¹⁴⁸⁾ 그러나 서민호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3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해 노조 결성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3월 10일을 기해 전속발령을 내렸던 노조 간부 5명을 기일 내에 부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노조 측과 회사 측의 대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1949년 3월 11일 전업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사회부 노동국에 제출하고 ① 불법 해고당한 노조 간부의 무조건 복직 ② 전업(귀속사업체) 노조 결성의 합법적 인정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사회부 당국에서는 3월 20일부터 행정조정에 착수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를 무시했다. 4월 2일에 이르러 사회부는 조선전업 쟁의문제를 중앙노동조정위원회로 넘겨 재정판결(裁定判決)을 의뢰했고 4월 28일에 이르러 판결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선전업 노동조합을 인정한다.
- ② 노조 위원장 최용수 외 5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전직 및 해고 처분은 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으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해 즉시 원상복귀시킬 것
- ③ 추가 제소한 강찬택을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할 것을 권고한다.
- ④ 전원경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 성의와 선의로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서민호 사장은 이러한 중앙노동조정위원회 판결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

148) 「성명서」, 『경향신문』 1949.2.26.(광고).

다. 이에 5월 10일 노조 측은 ① 중앙노동조정위원회의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케 할 것 ② 사회부는 서민호 사장을 즉시 법에 의해 고발할 것 등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전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¹⁴⁹⁾ 조선전업 쟁의문제가 단전파업으로 파급될 기세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종적인 결말을 짓게 되었다. 5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파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단전파업을 취소시켰으며,¹⁵⁰⁾ 조선전업 노동조합 결성은 합법적이며,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복직시키라고 지시했다.

1949년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이 사회부 장관에게 보낸 이 문서에는 여러 개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회부 장관이 조선전업주식회사 사장 서민호에게 보낸 <조선전업주식회사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조정판정 실시에 관한 건 통고>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서민호는 단기 4282년 4월 15일 중앙노(中央勞) 위원장이 송치한 중노조(中勞調) 제1호 판정을 준행”하며, “이행상황을 지체 없이 사회부 장관에 보고”하라고 통고했다.

5월 13일과 14일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조선전업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판정 심사에 관한 건>에서는 “본 건 조정판정은 적법하다”, “본 건 조정판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該) 행정소송에서 무효·취소의 선언 또는 집행정지의 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該) 조정판정은 구속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했다.

5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조선전업노동쟁의에 대한 조정판정 심사에 관한 건>은 “사회부,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2건 서류 급(及) 조선전업주식회사 4282년 4월 6일자 건의서를 송부”하니 조정판정에 대한 적법여부를 심사해 신속히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5월 9일 사회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조선전업주식회사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조정판정 실시에 관한 건 의뢰>와 1949년 중앙노동조정위원회 판정문이 첨부되어 있다. <조선전업주식회사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조정판정 실시에 관한 건 의뢰>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선전업주식회사 노동쟁의 사건의 조정경위, 단기 4292년 중노조(中勞調) 제1호 판정 실시 방안을 보고했다.

149)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 해방후 편-』, 청사, 1982, 128~130쪽.

150) 전업분규 조정, 대통령 특명으로 파업 연기 『조선중앙일보』 1949.5.17,

〈노동쟁의 사건의 조정경위〉

1. 조선전업노동조합 위원장 최용수(신청인)는 조선전업회사 대표 서민호(피신청인)를 상대로 1949년 2월 25일 진정서를 사회부에 제출. 3월 2일 조정신청서를, 3월 11일 조정추가신청서를 각각 중앙노동조정위원회에 제출.
2. 사회부는 노동국 조정안에 하명(下命)해 행정조정(화해)에 노력했으나 당사자의 고집으로 성립되지 못함. 3월 15일 중앙노동조정위원회에 회부. 중앙노동조정위원회는 4월 7일 단기4282년 중노조 제1호 판정을 내려 4월 10일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함. 신청인은 구두로 불만족한 판정이나 최후적이요 구속적인 결정인 고로 불복하겠다고 신고해 왔음. 피신청인은 4월 18일 서한으로 부당한 판정이므로 불복중한다는 것과 해(該) 판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입각해 최후적이요 구속적인 결정이 못될 것이라고 통고. 신청인은 4월 20일 서신으로 피신청인이 불복중하면 신청인 등은 시급히 정죄처벌(定罪處罰)할 것을 주장하며 만일 해(該) 판정이 일부 분이라도 무효하면 파업권을 행사해 직접 해결할 것이라고 통고함.

〈단기 4292년 중노조(中勞調) 제1호 판정 실시 방책〉

1. 중앙노동조정위원회가 내린 판정은 법령 제19호 제2조 제2항에 의해 최후적이요 구속적인 판정임. 해(該) 판정에 대한 불복종은 불법이므로 정죄처벌을 법원에 요청함이 마땅할 것이나 동법 제정 이래 조정판정에 불복종한 사례는 1건도 없고 또 피신청인은 행정부에서 임명한 귀속사업체의 중요 직원인 고로 사회부는 법의 발동까지 이르지 않고 행정적 조치로 해결할 방침을 취해 사회부 장관 명의로 대통령 각하의 명령에 의해 해(該) 판정에 복종할 것을 권고할 작정으로 목하 상공부 장관과 합의로 결재를 얻어 대통령 각하의 조정을 청하고 있는 중임.
2. 법령 제19호 제정 시와 같이 민중생활상 중요생산의 중지 또는 감축을 방지함은 필요하며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 보류는 군정장관 포고 제3호에 예시한 필요불가결한 공용시설 즉 조선전업주식회사와 같은 시설 내에서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위원회가 판정한 조항은 당사자에 최후적이요 구속적으로 엄격히 효력을 발생해야 될 것이다.

조선전업회사 서민호 사장은 중앙노동조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조정위원회는 조정하는 기구이므로 판결권은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1949년 5월 11일 조선전업노조는 5월 12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에 이르는 48시간 내에 중앙노동조정위원회의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경우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경인지구 일대에 1시간 단전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¹⁵¹⁾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정부 당국 내 사회부와 상공부, 법무부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했다. 최창순 사회부 장관은 중앙노동조정위원회의 판결은 합법적이며, 전업노동자들의 파업도 합법적 노동운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임영신 상공부 장관은 조선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준공무원으로 인정되므로 노조 결성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파업을 단행한다면 <조선전업관리령>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장관은 조선전업의 단전파업은 산업 재건 과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추호의 용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⁵²⁾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전업노조는 단전(斷電)파업을 결정했다. 단전파업이 임박하자 급기야 이승만 대통령은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지해 14일 오전 11시까지 경무대로 출두할 것을 지시했다. 14일 노사 양측과 사회부, 대한노총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전업노조를 승인했으며, 이러한 결정에 의해 조선전업노조는 단전파업을 취소했다.¹⁵³⁾

151) 「이번은 斷電罷業 惡化되는 電業勞組 紛糾」, 『경향신문』 1949.5.12.; 「電業勞組 爭議 再燃. 社會部에 通告文」, 『동아일보』 1949.5.12.

152)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 해방후 편-』, 청사, 1982, 130~131쪽. 1949년 5월 13일 사회부 노동국장 전호업은 임영신 상공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조선전업 종업원은 준공무원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독단적 견해”이며, 아직 공무원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데도 준공무원이라고 단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電業爭議 兩方 代表 大統領을 訪問」, 『동아일보』 1949.5.15.

153) 「斷電은 取消. 電業勞組 聲明書」, 『동아일보』 1949.5.17.

대한방직 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에 의한 건의 이송의 건

국무원사무국 / 1956 / BA0587737

1956년 6월 27일 국무원 사무국장이 대한방직에서 일어난 노동쟁의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 결의 대정부건의안을 대통령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로, 국회 진상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토대로 만든 <대한방직 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대한방직회사는 원래 군시방직(주) 대구공장이었으며, 해방 후 미군정이 적산으로 관리했다. 이후 1949년 조선방직에 통합되어 조선방직 대구공장으로 운영되었다. 조선방직 대구공장은 1955년 5월에 당시 자유당 재정부장직을 맡고 있던 설경동이 권력층과 결탁해 불하받으면서 대한방직 대구공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한방직 노동쟁의는 설경동 사장이 강일매로부터 대한방직을 인계받을 당시의 종업원을 대규모로 해고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설경동은 공장을 인수한 후 곧바로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종업원 2,600여 명을 해고했다. 이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시위투쟁을 전개하자 설경동 사장은 수개월이 지난 후 연말에 이르러서 200여 명의 노동자만을 다시 채용하고 어용노동조합까지 만들도록 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격분해 투쟁을 재개하자 약 600여 명의 노동자를 다시 채용했다.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전보다 악화되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으며,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연장하고, 여직공 1인이 직포기 4대를 담당하던 것을 5~6대로 늘리는 등 무리한 노동을 강요했다. 이러한 회사 측의 횡포에 저항해 대한방직 노동자는 1956년 1월 5일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어용노동조합을 축출하고 새로운 위원장으로 김상연을 선출하는 등 노동조합을 개편하고 쟁의태세를 갖추었다. 뒤이어 1월 3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① 임금인상 ② 휴업보상금 지불 ③ 인사 예정자 조속 채용 ④ 부당해고 철회 ⑤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배제 ⑥ 단체협약 체결 등 6개항의 요구조건을 채택하고 쟁의에 돌입했다.¹⁵⁴⁾ 이러한

154)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해방후 편-』, 청사, 1982, 203~204쪽; 「大韓紡織 動搖. 賃金引上을 要求」, 『동아일보』 1956.2.2.

상황에서 섬유연맹과 대한노총은 이 문제를 보건사회부에 건의했다. 경상북도 당국 또한 대한방직 쟁의에 관심을 갖고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으며, 적극적으로 조정에 착수했다. 이리하여 2월 22일 보건사회부와 경상북도 당국의 조정이 이루어져 임금인상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25일에는 임금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3월에 이르러 노사 쌍방 대표는 이미 합의된 5개 항목에 더해 임금인상은 내외방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는 데 합의를 보고 협정서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① 임금인상의 경우 대구내외방직주식회사 11시간 평균임금을 10일 이내에 조사해 실시 ② 휴업수당 백만 환 지급 ③ 취업예정자 160여 명 채용 ④ 부당해고자 복직 ⑤ 3월 25일 이내에 단체협약 체결 등이었다. 그러나 노임인상은 내외방직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합의했는데,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각각 조사한 결과 월 4천여 원이라는 차이가 존재했다.¹⁵⁵⁾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이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회사 측에서 협상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쟁의는 종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었다.¹⁵⁶⁾ 4월 2일에는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열어 배형(裴亨)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투쟁의지를 다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신임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38명의 노조 간부와 열성 조합원을 해고시켰으며, 다수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 채용했다. 5월 5일 점심시간에는 무장 사복경관 수십 명이 출동해 공장을 에워싸고 노동자들의 데모를 제압했다.

대한방직 쟁의는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했다. 대한노총에서는 5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5월 31일까지 노조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¹⁵⁷⁾ 또한 대한노총 사무총장 대리 이상진은 대한방직쟁의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¹⁵⁸⁾ 청원서를 검토한 국회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6월 1일 진상조사단 파견을 결의했다. 정준(鄭濬), 박종길(朴鍾吉), 육완국(陸完國), 김익로(金益魯), 박영종(朴永鍾)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6월 1일부터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155) 임송자, 「1961년 5·16 이후 국토건설사업과 국토건설단 운영 실태」,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년 겨울호 참조.

156) 장미현, 「1950년대 후반 대구 대한방직노동쟁의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19~20쪽.

157) 「勞總, 總罷業 氣勢. 대구 大韓紡織 爭議 未決로」, 『동아일보』 1956.5.30.

158) 「大韓紡織勞動爭議의國會 真相調查 報告」, 『경향신문』 1956.6.21.

문서는 국회 본회의에서에서 결의된 대정부건의안을 대통령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국회 진상조사단은 대구에서의 현지조사와 더불어 대한방직 사장 설경동, 대한노총 간부의 증언을 청취한 후 6월 23일 국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대구 대한방직회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안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국회 진상조사단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표결 결과 재석 111인에 가 96표, 부 0표로 가결되었다.¹⁵⁹⁾ 정부로 보낸 건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항상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 자유권을 보장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정책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간의 이익에만 끌리어서 노자 간 조정 불공정 또는 태만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금번 발생한 대한방직회사 대구공장의 노자 쟁의사건에 대해 정부 측의 일방적 처사는 이를 부당하게 보는 바이며 그 무성의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정부는 노동행정 본래의 사명을 살려서 대방쟁의(大紡爭議) 사건에 대해 특히 좌기 제점(諸點)에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라며 건의하는 바이다.

1. 경상북도에 노동위원회를 조직할 것.
2. 3월 12일에 협약을 체결한 6개 항목 중 2, 3, 4, 5, 6의 5개 항목을 완전히 실행하도록 할 것.
3. 부당 해고자를 복직케 할 것.
4. 노자 간 협약에 의해 접수하기로 한 휴업보상금 100만 환은 각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할 것.
5. 노동조합법을 제정한 본래의 정신에 위배되는 노동운동은 이를 엄금할 것.

위 건의안에서 알 수 있듯이 경상북도에는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중앙에 노동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지만 각 도에는 노동쟁의의 조정 역할을 담당할 노동행정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측에서 3월에 체결한 협약 6개항 중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

159)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2회 제39호, 1956.6.23.

도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고 휴업수당 지급, 취업 예정자 160여 명 채용, 부당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체결 등의 미이행 항목에 대해서 완전한 실행을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휴업보상금 100만 환은 각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건의안이다. 노동조합이 기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받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회는 휴업수당을 노동조합에 주지 말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첨부된 <대한방직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는 국회 조사단이 현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조사단 구성과 6월 1일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간 과정 등이 담겨 있다. 조사단은 경북도지사, 경북도경찰국장, 경북도문사국장, 대한방직 사장대리, 대한방직노동조합 위원장(배형파, 김상연파)을 불러 증언을 청취했으며, ① 쟁의 발생의 원인과 경위 ② 사용자가 쟁의 중에 고용자를 해고시킨 사실 유무 ③ 쟁의 중에 경찰이 간섭한 사실 유무 ④ 노동조합이 분열된 이유와 기업주와의 관계 등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을 밝혔다.

본론에서는 ① 대한방직 대구공장, 대한노총 성명서 등 노조 측의 청원서 내용 ② 회사측 성명서 ③ 보건사회부, 경상북도 당국, 경찰로부터 청취한 증언 내용 ④ 전 대한방직 노조와 현 대한방직 노조에서 청취한 증언 내용, ⑤ 대한방직회사 측으로부터 청취한 증언 내용 ⑥ 사회보건위원회의 견해 등을 수록하거나 기술했다.

1956년 5월 31일 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조합, 대구지구 섬유연합회, 대구지구 연합회 위원장과 경상북도 노동조합연합회 대표위원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 그리고 5월 28일 대한방직 노동쟁의 투쟁위원회 책임지도위원 정대천, 김주홍, 이준수, 이상진, 김말룡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호소문>에서 주목할 점은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총 중앙본부의 지시에 의해” 쟁의를 중지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가 5월 17일 투쟁을 재개했다는 부분이다. 2개월 전 대한노총이 우마차까지 동원해 이승만의 대통령 재출마를 요구함으로써 ‘민意(民意)’ 아닌 ‘우의(牛意)’, ‘마의(馬意)’의 데모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동자들을 선거에 동원하기 위해 쟁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5월 31일 대한방직주식회사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동아일보』 1956년 6월 3일자

에 광고로 크게 실리기도 했다. 회사 측은 성명서를 통해 5월 28일 대한방직 노동쟁의투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극히 일방적이고 또 사실을 왜곡한 허위적인 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인상이 경영면에서 커다란 타격을 주었지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즉각적으로 실천했다고 밝히면서, 대구지구 노조위원장 김말룡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분자들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장 건물 파괴, 집단폭행 등등의 파괴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본론에 수록한 자료 중에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증언청취서>이다. 국회 진상조사단에 초치되어 출석한 인사는 ① 보건사회부: 차관 정진욱(鄭鎭旭), 노동국장 한몽연(韓夢淵), ② 경북도 당국: 지사 이근직(李根直), 문교사회국장 최순교(崔舜敎), 문교사회국 주사 신영균(申永均), ③ 경찰 측: 경북도경찰국장 송관수(宋寬洙), 경북도사찰과장 최낙중(崔洛中), 대구경찰서장 이정석(李丁錫), 대구경찰 형사주임 강래원(姜來元), ④ 노조 측(김상연 측): 전 노조위원장 김상연, 전 노조부위원장 김원달, 사무국장 이병태 / 노조측(배형 측): 노조 위원장 배형, 부위원장 손창수, 사무국장 김중학, 감찰위원장 박기호, 도연합회 쟁의부장 한위술 등, ⑤ 대한방직회사: 사장 설경동, 전무 최점석, 공장장 김규, 총무부장 김순석, 인사주임 권오규, 인사담당 홍윤선 등이다.

결론에서는 건의안과 함께 각 관계자의 과오를 지적하고 있다.

① 보건사회부: 경북도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아 쟁의조정에 불편을 야기한 사실 ② 경북도 당국: 도지사 명의로 경북도경찰국장에게 노조를 상대로 고소하게 한 사실 ③ 경찰: 쟁의 중에 경찰관이 노동자를 구인구류(拘引拘留)케 한 사실, 쟁의 중에 노조간부를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한 사실 ④ 대한방직회사: 쟁의 발생 후 협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제1항만 실천하고 제2~6항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아니한 사실, 쟁의 중에 14명(사용자 측 주장)을 부당 해고한 사실, 쟁의 중에 신규 채용을 한 사실 ⑤ 대한방직 노조: 노조법 제3조에 의하면 사용자 측으로부터 노조 운영비를 받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받으려고 했던 사실, 노조 운영에서 간부들의 행동통일이 안되어 분열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실, 쟁의행위가 무질서했다는 사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김상연 측 노조는 사용자 측의 이익을 대변함으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이다.

각 탄광노조의 노임인상 투쟁에 대한 최근 동향에 관한 건 보고^[1]

대한석탄공사 / 1953 / DA0417657

근로쟁의 발생에 관한 건^[2]

대한석탄공사 / 1953 / DA0417657

노동쟁의 발생에 관한 건^[3]

대한석탄공사 / 1953 / DA0417657

문서 [1]은 1953년 12월 10일 광산노동조합연맹에서 ‘임금인상투쟁위원회’를 구성하자 대한석탄공사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작성한 것이며, [2]와 [3]은 1953년 12월 12일 대한석탄공사가 사회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이다. 이들 문서는 1953년 12월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에서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펼친 임금인상 투쟁을 배경으로 대한석탄공사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노동쟁의의 목적과 ‘임금인상투쟁위원회’ 구성, 그리고 쟁의에 대한 대한석탄공사와 주무부처인 사회부의 대응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1953년 노동관계법 공포에 따라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이하 광산연맹)은 재조직 과정을 밟았다. 대한중석상동광산노동조합을 비롯해 중석 본사, 장성, 도계, 화순, 은성, 옥방 등 8개 노조에서 각각 의법대회를 개최한 후 6월 24일 광산연맹 재조직 결성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 위원장에 이준수(李俊洙, 상동), 부위원장에 김을경(金乙卿, 도계), 박청산(朴靑山, 장성), 백동기(白東基, 중석본사)를 선출했다. 광산연맹은 9월 1일 제1차 집행위원회를 열어 ① 조직 확장 ② 단체협약 체결 촉진 ③ 체불노임 청산 등을 긴급 당면과제로 설정했으며, 체불노임에 대해서는 석공 당국과 교섭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할 것을 합의했다.¹⁶⁰⁾

제1차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광산연맹은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 측에 체불노임을 청산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석공에서는 시종일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광산연맹은 12월 8일 제2차 집행위원회를 열어 그 대책을 논의하

160) 전국광산노동조합, 『광노 25년사』, 전국광산노동조합, 1974, 55~56쪽.

고 ‘임금인상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서 [1]은 광산연맹에서 12월 8일 제2차 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임금인상투쟁위원회’를 구성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쟁의의 목적이나 ‘임금인상투쟁위원회’ 임원 명부를 파악할 수 있다.

쟁의 목적은 “본사 임금규정에 의한 갱내부 1공(工) 당 400환, 갱외부 1공(工) 당 210환의 구획을 폐지하고 갱내부 일 임금 21,000환, 갱외부 일 임금 7,000환”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임금인상투쟁위원회’는 위원장 이준수(광산연맹 위원장), 부위원장 강훈(康勳, 영월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김을경(도계노조 위원장), 총무부장 정병석(鄭炳錫, 광산연맹 총무부장), 선전부장 김성천(金星天, 광산연맹 선전부장), 쟁의부장 김정원(金正元, 화순노조 위원장)과 전국 광산 각 노조 1인씩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문서를 작성한 노무과는 “본격적 쟁의에 돌입하기 전 본사에서 노조 측과 회합해 타협적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호책(好策)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서 [2]는 광산연맹으로부터 쟁의통고를 받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석공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노동쟁의조정법이 몇 개월 전에 제정,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석공 측에서 노동쟁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 즉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4조 등을 문서에 적시했다. 문서에는 1953년 12월 12일 광산연맹 투쟁위원회에서 석공에 보낸 <노동쟁의의 통고>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성명서는 “매일 폭등일로(暴騰一路)를 걷고 있는 물가고로 말미암아 씩씩한 산업역군 석공 산하 종업원은 현재 받고 있는 저임금으로서는 도저히 생활보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불되어야 할 임금이 2개월 내지는 3개월 미불되어 있어 석탄 생산에 적신호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미불임금 청산이 필연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인상 관철을 목적으로 한 노동쟁의를 통고했다.

문서 [3]은 광산연맹이 노동쟁의를 제기하자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석공에서 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1953년 3월 8일 제정, 시행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광산연맹으로부터 노동쟁의를 통고받은 석공이 사회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 보고에서 석공은 1953년 10월 16일자로 탄가 인상에 따라 갱내부 일급 400환, 갱외부 일급 210환으로 한 광원임

금 및 보상규정을 개정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광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10월분까지 각 광업소에 공급했으나 11월분부터는 만부득이한 자금사정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950년대 광산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체불노임문제여서 광산연맹은 체불노임 청산을 목적으로 한 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했다. 1953년 석공의 6개월분 노임체불은 광산노동자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광산연맹은 석공에 대해 노임체불 청산을 요구하고 진정했지만 끝내 이를 외면했다. 이에 광산연맹은 1953년 12월에 이르러 건의와 진정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투쟁 태세를 갖추고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광산연맹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듬해 9월에 가서야 체불노임이 청산되었다.¹⁶¹⁾ 그러나 이마저도 일시적인 해결에 지나지 않았고, 또다시 체불임금이 누적되는 현상은 되풀이 되었다.

161) 전국광산노동조합, 『광노 25년사』, 전국광산노동조합, 1974, 56~57쪽.

대한노총 광산연맹 대한석탄광노동조합연합회의 성명서에 관한 건 ^[1]

대한석탄공사 / 1954 / DA0417657

탄광 총파업 선언문 ^[2]

대한석탄공사 / 1954 / DA0417657

각 광업소 쟁의행위(파업) 종결 보고의 건 ^[3]

대한석탄공사 / 1954 / DA0417657

쟁의행위(파업) 경과 보고의 건 ^[4]

대한석탄공사 / 1954 / DA0417657

영월광업소 파업에 대한 통신보도에 관한 건 ^[5]

대한석탄공사 / 1954 / DA0417657

영월광업소 파업 관계 보고 전보 ^[6]

대한석탄공사 / 1954 / DA0417657

이들 문서는 1953년 노동쟁의에 이어 1954년 10월 대한노총 광산연맹에서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체불노임 청산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또다시 노동쟁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생산한 것이다. 대한노총 광산연맹 대한석탄광 노동조합연합회 소속의 여러 노동조합이 동시에 노동쟁의를 일으킨 상황, 기업주인 대한석탄공사의 대응, 그리고 각 광업소에서 일어난 쟁의의 원인과 과정, 결과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은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산업시설의 파괴로 노동자들은 실직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월남민에 의한 실업자 수가 격증하면서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당연한 것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기 크게 감소했던 노동쟁의는 1950년대 중반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의 희생과 인내를 감내할 수가 없어 생존권을 목적으로 투쟁에 나선 것이다. 특히 광산 등 지에서의 체불노임으로 인한 쟁의가 두드러졌다.¹⁶²⁾

대한노총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이하 광산연맹)은 체불노임과 임금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와의 단체교섭이 여의치 않자 석공 내의 각 노조를 하나의 연합단체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1953년 9월 1일 열린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석공 내 각 노조는 기업노조연합회 조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기업노조연합회 조직 결성은 곧바로 성사되지 못한 채 지체되다가 1954년 7월에 이르러 대한석탄광노동조합연합회(이하 탄연) 결성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었다. 결성대회에서 위원장에 김정원(金正元), 부위원장에 김을경(金乙卿)·엄기선(嚴基善), 사무국장에 한기수를 선출했으며,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임금인상과 체불노임 청산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¹⁶³⁾

문서 [1]은 1954년 11월 1일 대한노총 광산연맹 탄연 위원장 김정원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체불노임 청산과 임금인상 요구를 내걸고 1954년 10월에 노동쟁의를 제기한 탄연의 11월 1일자 성명서이다. 6개월 간의 노임체불과 더불어 물가양등으로 임금은 생계비의 1/3밖에 안 되는 형편으로 실질임금이 저하되자 조속한 체불노임 완불과 임금인상을 관계당국에서 요구하면서 10월 26일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이 성명서는 노동쟁의의 목적과 사용자의 임금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가치가 있다. 탄연은 성명서에서 “석탄의 중요성과 아울러 모든 시설이 불충분한 원시적인 작업조건 하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하자원 개발에 헌신감투(獻身敢鬪)하는 폐(弊) 연합회(聯合會) 산하 탄광노동자 7천여 명은 천정부지(天井不知)의 물가고와 살인적 임금정책 밑에서 기적적인 생활을 계속해 오든 바 금반 단기 4287년 10월 26일을 기해 임금인상을 요구코 노동쟁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공은 1953년 10월 석탄가격 인상 때 근로자의 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월 72,500톤의 과중한 생산량을 책정했으며, 1954년 탄가인상에 따르는 임금인상계획에서도

162) 이영희,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영학출판사, 1989, 82쪽.

163) 전국광산노동조합, 『광노 25년사』, 전국광산노동조합, 1974, 58쪽.

작업 실적의 약 20%를 가중해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탄연은 임금인상투쟁에 나섰다면서, ① 일당 2만3천175환을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 ② 미불임금 4개월분(7~10월분)을 11월 15일까지 완불하라는 내용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문서 [2]는 1954년 11월 27일 대한노총 광산연맹 탄연 위원장 김정원, 영월탄광노조 위원장 엄기선(嚴基善), 도계탄광노조 위원장 김을경(金乙卿), 은성탄광노조 위원장 김남용(金南龍), 화순탄광노조 위원장 이경환(李敬煥)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성명서는 노동쟁의를 일으키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성명서에 의하면, ① 1953년 9월부터 대표자들이 수시로 회합해 투쟁위원회 구성 ② 1954년 6월 23일 탄원서를 국회나 관계당국에 제출, 7월 24일 국회 사회보전분과 위원회에 상정됨 ③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한 결과 6개월간 미지불 임금을 1개월 이내에 완불할 것을 결의 ④ 이러한 지시는 지켜지지 않은 채 40일이 지나서야 3개월 정도의 임금이 지불됨 ⑤ 노조는 9월 1일자로 재차 진정서를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관계 당국자에게 제출 ⑥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게 되자 10월 26일자로 정식 쟁의 통고 ⑦ 법적 냉각기간이 만료하자 1953년 11월 1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였지만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탄광노조 연맹원의 총의에 따라 11월 30일 정오까지 해결책이 없을 때는 12월 2일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때 요구조건은 임금을 월 23,175환 평균율로 인상할 것, 미불임금을 즉시 청산할 것, 석공의 노임정책을 시정할 것 등이었다.

문서 [3]은 치안국 특수정보과에서 전화연락으로 파업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각 광업소의 파업 개시와 종결 상황은 다음과 같다.

광업소	파업 개시	파업 종결	비고
화순	12월 2일 상오 6시	12월 4일 상오 6시	파업 종결은 미확인
도계	12월 3일 상오 0시	12월 4일 상오 0시	24시간 파업
영월	12월 2일 상오 8시	12월 4일 상오 8시	48시간 파업
은성	12월 2일 상오 8시	12월 4일 상오 8시	전원 777명 중 약 500명만 파업 참가

12월 4일 도계광업소장과 장성기술부 차장이 석공 총재에게 각각 보낸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도계광업소장은 “3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한 후 쌍방 타협 결과 24시간으로 종결하고 4일부터 일제(히) 취업기로 결정”했다고, 그리고 장성기술부 차장은 “장성광업소는 정상적으로 작업 계속, 도계는 3일부터 작업중지”했다고 석공 총재에게 보고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장성광업소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문서 [4]에서 석공 총재 임송본(林松本)은 탄연에서 임금인상(요구액 1인당 23,175환) 및 미불노임 지불을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상공부·내무부 장관, 대통령비서관에게 보고했다. 각 광업소별 파업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각 광산별 파업 상황>

광업소	재적 인원	1일 생산량 (11월실적)	파업 상황				비고
			개시일시	종결일시	延時間	참가인원	
영월	1,930	407톤	12.2 상오 8시	12.4 상오 8시	48	노조원 전원	직원 현지출장 보고에 의함
도계	1,243	539	12.3 상오 0시	12.4 상오 0시	24	〃	〃
화순	704	212	12.2 상오 6시	12.4 상오 6시	48	〃	서류보고에 의함
은성	784	233	12.2 상오 8시	12.4 상오 8시	48	노조원 중 약 5백 명	치안국 특수정보과 연락에 의함
계	4,661	1,451	4개소				
장성	2,192	1,171					장성노조는 석탄광노련에 미가입으로 파업에 불참가
합계	6,853	2,625					

문서 [5]는 1954년 12월 14일자 『상공통신(商工通信)』이 첨부되어 있다. 『상공통신(商工通信)』 특파원이 조사한 탄광노동자의 동향이나 상공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탄광 운영합리화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탈락된 페이지가 있으며, 일부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상공통신 12.14(화) 영월탄광 답사기(상)**: 갱내 노동자는 파업에 무관심. 급료(給料) 지연(遲延)되어도 생활 위협 없다 =본사 특파원 박석주(朴碩柱) 기(記)=

지난 12월 2일 오전 8시를 기해 영월광업소를 필두로 노임인상과 미불급료 지불을 요구하는 48시간의 파업이 단행되었고 그 후에는 노동법령 위반이란 명목 아래 사회부 장관이 석공 총재를 걸어 고발하는 법정문제까지 야기시킴으로 국내외의 시선을 집중케 한 바 있어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특사로 정일권(丁一權) 대장을 비롯해 김일환(金一煥) 중장과 경무대경찰서장을 영월 광산(이하 내용은 뒷 페이지가 탈락되어 알 수 없음: 인용자)

○ **상공통신 12.14(화)**: 업소에 파견해 파업에 관한 현장조사를 한 일 등은 주지의 (이하 7~8개의 문자 판독 불가: 인용자) 문제화 한 대한석탄공사 ○○의 각 탄광노동자들의 동향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석공 자체만의 책임이라기보다 석탄가격 인상을 위요(圍繞)한 국회의 재정분과위원회의 책임도 없지 않은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노동자의 능동적인 파업인가. 불연(不然)이면 제3자의 개재(介在)가 있었는가 하는 사회의 여론이 구구했는데 6일부터 5일간에 걸쳐 영월 현지를 답사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판명되었다. 즉 금반 파업의 주동지인 영월광업소는 12월 10일 현재 1천8백97명의 노동자를 보유하고 기중(其中) 700명의 갱외 작업자를 제외하고는 각 갱내 굴진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영월발전소의 월 소요량 1만2천 톤을 매일 490톤 내지 500톤의 생산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임금은 갱내 작업에 있어서는 1톤 채굴 260환으로 1인 평균일 3톤 가량 채굴하고 있어 보통 2만 환 정도의 노임이 지불되는 셈이고 갱외 작업자는 7천 환 내지 8천 환의 월급이 급여되는데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전부 동 광업소 관리의 사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임지불이 3, 4개월씩 지연되어도 식량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일에 배급된다는 것과 연료 급(及) 전정(電燈) 수도 심지어는 잡종 납부금의 면제 등 특전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노동자들의 생활에는 위협을 면하고 있어 사실상 갱내 작업자까지도 파업 등에 관해서는 관심이 별무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당일의 만 6시간 위험작업에서 무사고할 것과 매월분 임금이 매월 지불되었으면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솔직한 요구인 것에 비추어 저반(這般) 야기된 파업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이 「삼자루」와 꼭쟁이를 들어미고 갱내에서 이러한 파업이 많고 노동조합의 지시에 피동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당지의 여론도 있어 탐문한 바 정부의 ○○○ 고위층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유관 여부에 대해 심각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다.

○ **상공통신 12.14(화):** 석공(石公) 기구개혁과 감원 병행. 상공부 운영합리화를 재검토: 상공부 당국에서는 감원을 단행하기 위해 석공에서 제출되어 온 12월 7일 현재의 직원 일람표를 진중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는 현재 석공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이라도 실행될 것으로 보이며 석공의 운영 자금난 타개를 위한 6억 환 긴급융자의 추진과 병행하는 경영합리화의 일단이라고 상공부 소식통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의 (이하 7~8개의 문자 판독 불가: 인용자)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석공 당국서 제출한 직원 일람표에 의하면 총인원 717명은 본사에 130명, 부산출장소에 56명, 인천출장소에 48명, 목포출장소에 20명, 그리고 장성탄광 39명, 영월탄광(이하 7~8개의 문자 판독 불가: 인용자) 탄광 56명, 화순탄광 〇〇명, 은성탄광 40명 등으로 배치되어 있는 바 동 인원 중 어느 정도의 감원을 단행할 것인지 당국의 처결이 주목되고 있다.

문서 [6]은 1954년 12월 9일 석공 영월광업소장이 석공 총재에게 세 차례(10시 17분, 10시 18분, 10시 19분)에 걸쳐 보낸 전보 내용이다. 전보내용은 제1신 “금일 오전 8시부터 2일간 파업 개시. 직원 전원 출근. 정세 지극 평온”으로, 제2신 “4일부터 정상작업함”으로, 제3신 “5일 장(張) 참모장, 김일환(金一煥) 중장, 경무대서장 일행 파업관계 래산(來山) 즉일(卽日) 귀경”으로 되어 있다.

문서에는 여러 건의 중요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첫째, 11월 20일자 <탄광총파업 선언문>이다. 선언문의 내용은 [2]번 문서와 거의 동일하지만 요구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거년(1953년) 8월 8일부터 소급 실시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둘째, 11월 27일자 위원장 김정원이 은성탄광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파업 지시령에 관한 건>이다. 위원장 김정원은 산하 각 단위노조에게 12월 2일 갑방(甲方)에서 병방(丙方)까지 48시간 총파업을 지시했다. 총파업을 지시하면서 ① 병원 관계 ② 전기시설 관계 ③ 수도 관계 ④ 중요 기계시설의 보수 관계 ⑤ 각 직장의 숙직원 ⑥ 갱내 보안작업 ⑦ 양수(揚水)작업을 필요로 하는 장소 ⑧ 기타 필요로 하는 장소 등에서는 취업하도록 했다. 셋째, 12월 2일 은성광업소장이 석공 총재에게 보낸 <노동쟁의행위 발생 보고의 건>이다. 은성광업소장은 “본일 상오 8시 본 광노조(礦勞組) 위원장 김남용으로부터 종업원 약 5백 명”이 탄연 위원장 김정원의 지령을 받고 파업을 단행했으나 현재로서는 불은(不隱)한 사안(事案)이 전무하다고 보고했다. 넷째, 12월 4일 은성광업

소장이 석공 총재에게 보낸 <파업행위 해제의 건>이다. 은성광업소장은 2일 상오 8시를 기해 파업을 단행했으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3일 하오 1시경에 경무 당국의 지시에 의해 위원장 김남용이 즉각 파업 행위 해제를 선언함과 동시에 전 종업원(맹원)에 대해 취업을 명령해 오후 4시 을방(乙方)부터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다섯째, 12월 1일 화순광업소장이 석공 총재에게 보낸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선언 보고의 건>이 첨부되어 있다. 화순광업소장은 당소(當所) 노동조합 위원장이 전 맹원에게 2일 오전 6시부터 48시간 파업을 선언했다고 보고했다.

1954년 12월 2일 석공 산하 영월·도계·은성·화순 등 4개 광업소 노조원 7,000여 명이 일제히 임금인상과 미지불임금 즉시 지불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돌입한 총파업은 노동관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48시간의 시한부 동맹파업은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서고, 군 지원단이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⁶⁴⁾

164) 「四個炭·勞務者罷業斷行」, 『동아일보』 1954.12.3.;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 해방후 편-』, 청사, 1982, 191쪽

임금인상에 관한 건

대한석탄공사 / 1955 / DA0417657

대한석탄공사 노무과에서 작성한 문서로, 1954년 12월 2일 대한석탄공사 산하 영월·도계·은성·화순노조에서 단행한 총파업이 종결된 후 1955년 2월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다. 1955년 2월 1일 대한석탄공사 총재가 대한노총 석탄광노조연합회 위원장에게 보낸 〈임금인상에 관한 건〉, 1955년 1월 17일 석탄광노조연합회 위원장이 대한석탄공사 총재에게 보낸 〈임금인상쟁의 종결에 관한 건〉, 1954년 12월 2일 사회부 장관이 대한석탄공사 총재와 상공부 장관에게 각각 보낸 〈탄가 인상에 수반하는 임금책정에 관한 건〉 등이 함께 묶여 있다.

대한노총 광산연맹 석탄광노조연합회(이하 탄연)은 체불노임 완불과 임금인상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10월 26일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에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1954년 11월 20일 위원장 김정원은 총파업선언문을 통해 “11월 30일 정오까지 해결책이 없을 때는 우리는 12월 2일을 기해 생을 위한 다음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석공은 이러한 실효행사에 굴복해 그동안의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1955년 1월부터 임금을 55%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쟁의는 종결되었다. 이로써 노동쟁의에서 탄연이 승리하였지만 이후에도 석공 측의 임금지불과 임금인상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¹⁶⁵⁾

문서는 1954년 12월에 노동쟁의가 종결된 후 1955년 2월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1954년 12월 2일 사회부 장관이 석공 총재에게 보낸 〈탄가 인상에 수반하는 임금책정에 관한 건〉에서는 “현재 귀사와 노조 간에 분쟁이 발생한 노임인상 및 미불노임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기본적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정책을 수립해 이후 여사한 쟁의 발생이 없도록 미연 방지에 진력”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부 장관이 상공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에서는 “귀부가 감독하고 계신 대

165) 전국광산노동조합, 『광노 25년사』, 전국광산노동조합, 1974, 61~62쪽.

한석탄공사의 각 광업소에서 종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아니하고 6개월분 또는 5개월분씩 거액이 누적 체불되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근자에는 임금액이 약소해 그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어 사회의 안녕이 유지되고 석탄 생산이 증강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955년 1월 17일 탄연 위원장 김정원이 석공 총재에게 보낸 〈임금인상쟁의 종결에 관한 건〉에서는 임금인상쟁의를 단행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총파업을 단행한 지도 1개월 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탄가 인상 후 20일이 경과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파업선언문에 제시한 4개 조목에 대해 래(來) 1월 30일까지 확답”을 주어야만이 쟁의는 종결될 것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현찰책정(賢察策定)”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1955년 2월 1일 석공 총재가 대한노총 탄연 위원장 김정원에게 보낸 〈임금인상에 관한 건〉 문서에서 석공 총재는 임금인상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2월 중순경 인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철도노동쟁의 경위보고에 관한 건

총무처 / 1955 / BA0084211

1955년 1월 26일 교통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로, 1954년 12월 대한노총 철도노동조합연맹이 제기한 노동쟁의와 관련한 쟁의 요구조건, 노동쟁의 조정안 등을 담고 있다. <대우개선 및 임금인상 요구서>,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건(사회부안)>, <임금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분부의 건>, <처우개선에 관한 노동협약서>, <성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1953년 노동관계법 공포에 따라 철도연맹도 재조직 과정을 밟았다. 1953년 6월 5일 제6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를 구성했으며, 대회를 마친 후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업무에 착수했다.¹⁶⁶⁾ 김주홍(金周洪)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25% 감원 정책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감원반대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현장원이 아닌 행정직 위주로 약 10% 정도의 감원에 그치는 성과를 얻었다.

철도연맹은 1954년 6월 30일 제7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임원을 선출했는데, 이때 위원장으로 김주홍이 재선되었다. 12월 24일 철도연맹은 사회부 당국에 ① 통상임금인 전시수당을 현 기본임금에 가산하고 그 금액의 10배를 인상할 것 ② 1954년 4월분부터 5천 환 베이스 임금의 미지불금을 지불할 것(조합원 2만7천 명에 대한 미지급액 2억4천3백만 환) ③ 1954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대우개선 인상액의 미지불금 반액을 지급할 것(조합원 2만7천 명에 대한 미지급액 1억68만9천 환)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에 들어갔다.¹⁶⁷⁾ 1955년 1월 14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인상 중앙쟁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법적 냉각기일인 1955년 2월 7일까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채행동권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로 노사협의를 임했다. 쟁의 초기에 사용자 측인 교통부의 태도는 냉담했다. 또한 주무행정관청인 사회부 노동국에서도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166)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 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62~63쪽.

167) 「'좁고 배고파 못견디겟소' 三萬 鐵道從業員이 當局에 呼訴」, 『동아일보』 1954.12.25.; 「待遇改善을 主張. 鐵道勞聯 拂賃金도 要求」, 『경향신문』 1954.12.26.;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 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66~68쪽.

노동쟁의 해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냉각기일 열흘을 앞둔 1월 26일 노사 간에 최종 합의를 보고 쟁의가 종결되었다.¹⁶⁸⁾

문서에서 교통부 장관은 ① “작년 12월 20일 대한노총 철도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교통부 3만 종업원을 대표해 별첨(1)과 같은 대우개선 및 임금인상 등 6개항에 걸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②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절충을 거듭했으며 ③ “사회부 장관으로부터 별첨(2)와 같은 노동쟁의 조정안이 1월 19일에 있었”으며 ④ “2월 20일 임금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분부를 배승하고 별첨(3)과 같이 3만 종사원에게” 전달했으며 ⑤ 1월 26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별첨(4)와 같이 협약을 체결했고 ⑥ 노총에서도 별첨(5)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했다.

첨부된 문서 〈대우개선 및 임금인상 요구서〉,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건(사회부안)〉, 〈임금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분부의 건〉, 〈처우개선에 관한 노동협약서〉, 〈성명서〉 등은 철도연맹의 노동쟁의 배경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펴낸 『철노 삼십년사』에 〈처우개선에 관한 노동협약서〉, 〈성명서〉가 수록되어 있지만 〈대우개선 및 임금인상 요구서〉,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건(사회부안)〉, 〈임금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분부의 건〉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사료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철노 삼십년사』에 수록된 〈성명서〉도 원문과 내용상 차이는 없으나 약간 표현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대우개선 및 임금인상 요구서〉는 대한노총 철도연맹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1954년 12월 20일 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이다. 철도연맹 위원장 김주홍은 “현재 물가고에 철도종업원은 최저생활의 보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누차에 걸쳐 대우개선에 대한 교섭을 한 바 있으나 하등의 대책이 없”어 대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리고 6개항의 노동쟁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각 조항마다 명시했다.

이 문서를 통해 1950년대 철도종업원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요구조건만을 단순히 해석해 당시 노동조합에서 과도하게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 이유(근거)를 통해서 충분

168) 「罷業 未然에 防止. 鐵勞, 交通部와 協定書」, 『동아일보』 1955.1.27.;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 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68~69쪽.

히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인 전시수당을 현 기본임금에 가산하고 其 금액의 10배를 인상할 것”이라는 요구조건이 있는데, 철도연맹에서 과도하게 10배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지불 중인 전시수당은 명목상으로는 수당으로 칭하고 있으나 본봉과 같은 실질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이라는 명칭상의 이유로서 초과근무를 비롯해 제반 수당금 산출에는 본봉인 3백여 원을 기본으로 하므로 1개월의 기술 수당이 불과 30여 원, 초과근무 수당이 112시간에 2백여 원이라는 노동력의 강제를 표시하는 비민주적 임금지불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급 중인 통상임금의 10배가 필요했다. 따라서 철도연맹에서 10배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볼 때 과도한 것이 아니었다.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건(사회부안)〉은 1955년 1월 19일 사회부가 노동쟁의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부는 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시수당을 기본임금(통상임금)으로 취급하고 현 기본임금 10배 인상문제에 관해는 사용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 ② 1954년 예산 편성 당시에 책정된 바와 같이 5,000원 베이스의 기본액을 소급 실시할 것 ③ 노조는 1954년도 예산으로 통과된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대우개선 인상액의 미지불금 반액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철회할 것 등을 제시했다.

〈임금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분부의 건〉은 1955년 1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대통령비서관이 대한노총 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이를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환산을 문제로 해결 못한 문제가 여럿 있는 까닭에 노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보조를 취하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노무자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할 정부의 결심이니 일반 노무자는 여기에 깊이 양해하고 다 같이 합해서 힘이 되어 경제공황을 해결할 것을 먼저 준행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총에서 요청하는 것은 지금 받는 임금에서 10배를 올리라는 조건은 한도에 넘치는 요구일 뿐더러 지금 형편은 그대로 할 수 없으므로 경제책의 개량을 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니 그리 알고 과도한 요구는 정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처우개선에 관한 노동협약서〉는 1955년 1월 26일 사용자 대표인 교통부 장관과 근로자 대표인 대한노총 철도연맹 위원장 사이에 맺은 것이다. 협의사항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① 철도노무자에 대해서는 단기 4288년 1월 1일부터 전시수당을 현 기본급에 가산해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산하기로 하고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 되도록 노력한다.
- ② 철도노무자에 대해서는 5,000환 베이스의 임금지불을 단기 4288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실시한다.
- ③ 단기 4287년도 예산으로 통과된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대우 개선 인상액의 반액 미지불금은 쌍방이 실시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 ④ 가족부양 양곡의 적기 배급과 일률적 배급 실시를 기한다.
- ⑤ 현장 후생시설과 의료시설의 완비는 계속 완비토록 한다.
- ⑥ 노동조건을 통해 인권옹호를 기하며 그 최초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성명서〉는 1955년 1월 26일 대한노총 철도연맹 임금인상쟁의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명의로 발표된 것이다. 〈삼만 철도노동자의 고발과 민주주의의 판결〉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성명서에서 대한노총 철도연맹 임금인상쟁의위원회는 “대통령 각하의 간곡하신 유시까지 받게 된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생을 향유한 영광과 아울러 우리 3만 동지가 강철같이 단결된 힘”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련의 투쟁성과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국가 원수의 고마운 유시와 교통부 장관의 성의 있는 노력은 우리의 주장이 지극히 존중되었다는 증좌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며, 쟁의 결과는 “오직 3만 철도노동자의 단결력의 반영으로 자랑하며 자부하며 민주주의의 정당한 판결 제1심”이라고 선언했다.

철도노동조합연맹에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건

총무처 / 1960 / BA0084255

1960년 10월 대한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에서 임금인상을 목표로 노동쟁의를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교통부가 작성해 11월 25일 교통부 장관이 국무원 사무처장에게 보낸 문서이다.

4월혁명 이후 노동쟁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노동쟁의 건수와 쟁의 참가인원 등이 대폭 늘어났으며, 노동조합 조직 수도 증가했다. 국가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억압기구가 붕괴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노동운동은 활기를 띠었다. 1950년대 자유당 권력에 종속되어 정치적 동원체로 기능했던 대한노총은 4월혁명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았다. 3·15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대한노총을 비롯한 전국의 각급 노동조합 간부들은 거의 대부분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각 노조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960년 5월 3일 철도연맹에서도 김주홍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으며, 6월 30일에는 교통부 부우회관에서 철도연맹 제1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이규철을 철도연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¹⁶⁹⁾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주권 확립 등을 강조했으며, 구체적으로 “근로공무원의 노동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¹⁷⁰⁾

이러한 결의에 따라 철도연맹은 10월 11일 전국조합장회의를 열어 임금인상중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 태세를 갖추는 한편 교통부 당국과 사전교섭을 통해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교통부 당국과의 사전교섭은 결렬되었다. 사용자 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10월 21일 철도연맹은 ① 임금 8만 환 베이스 인상(5급 12호봉) ② 위험수당 월간 갑종 5,000환, 을종 3,000환, 병종 2,000환으로 인상할 것 ③ 현행 각종 여비를 배액으로 인상할 것 ④ 기관차 승무원의 업무시간 개정(주간 36시간) ⑤ 철도종업

169) 「李圭喆을 選出. 全國鐵勞 委員長」, 『경향신문』 1960.7.1.

170)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 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130쪽.

원에 단독보수제 실시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에 돌입했다. 11월 17일에는 법적 냉각기간이 지난 후의 실행행사에 대비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 조합원의 90%가 실행행사에 찬성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연맹은 정부당국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측의 요구조건을 법제화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냉각기간이 경과한 1961년 1월 15일까지 실행행사를 일단 보류했다.¹⁷¹⁾

문서는 대한노총 철도연맹에서 제기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6주간의 냉각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에 작성된 것이다. 12월 1일까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실행행사를 불사하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시급히 국무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철도연맹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철도연맹의 단독보수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철도공무원법 철도공무원보수규정 제정 요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문서에 의하면, 교통부는 철도연맹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방침을 제시했다. ① 봉급 8만 환 베이스 인상과 여비 배액인상에 대하여는 단기 4294년 3월 이내에 제출예정인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 시 공무원 처우개선책을 최대한 고려한다 ② 위험수당은 현재 시행 중인 월간 갑종 30환, 을종 24환, 병종 15환을 갑종 3,600환, 을종 2,800환, 병종 1,800환으로 인상해 단기 4294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한다. 또한 철도공무원법 및 철도공무원 보수규정 제정의 요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현행 공무원법의 예외로서 특별법을 제정한다 ② 교통부 공무원 중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적용한다 ③ 철도공무원의 보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철도사업의 공익성을 실(失)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해야 한다.

<철도노동조합연맹에서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건(안)>은 1960년 11월 26일 오전 각의에서 의결되었다. 신년도부터 철도공무원의 봉급 베이스를 8만 환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196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그리고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월간 갑종 30환을 3천6백 환으로, 을종 24

171)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 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132~139쪽.

환을 2천8백 환으로, 병종 15환을 천8백 환으로 인상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¹⁷²⁾

그러나 교통부 당국이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노동쟁의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자 1961년 1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걸친 1시간의 통신파업을 단행했다. 당국은 8만 환 베이스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협약을 어기고 20% 이상을 발표했으며, 11월 15일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단독보수제도 협약 기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철도노조는 ① 최저생활 확보를 위한 100% 인상요구에 준하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단행하라 ② 당국은 시급히 철도공무원법을 제정, 공포하라 ③ 처우개선을 구실로 한 철도운임 인상을 반대한다 ④ 공무원 처우개선은 하부말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단행했다.¹⁷³⁾ 파업은 3월 31일 노사 간의 협정조인으로 종결되었다. 사용자 대표인 교통부 장관과 근로자 대표인 철도연맹 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대우개선에 관한 협정>에서 1961년 4월분부터 월봉액(본봉 및 전시수당) 20%의 조(현)업수당 지급, 연봉액(본봉 및 전시수당)의 8%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등을 협정했다.¹⁷⁴⁾

172) 「八萬圓'베이스'로 引上. 새해부터 鐵道公務員의 俸給」, 『경향신문』 1960.11.26.

173)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 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139~140쪽.

174)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 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143쪽.

철도노동쟁의 종결을 위한 현업수당 지급의 건(안)

경제기획원 / 1964 / BA0138597

1964년 2월 20일 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문서로, 한국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제기한 노동쟁의와 관련해 1964년 2월 19일 노사대표자가 조인한 협정 내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고 쟁의를 종결짓기 위해 작성되었다. 2월 19일 사용자 대표인 철도청장과 근로자 대표인 철도노조 위원장이 체결한 〈임금인상에 관한 협정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는 1963년 말부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쟁의가 1964년 1월~2월에 들어서 본격화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963년 9월 27일~28일 양일간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생활급(生活給)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 투쟁을 결의했으며, 대회결의문으로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기본급 인상”, “현업공무원 중심으로 연금법 개정” 등을 채택했다.¹⁷⁵⁾ 철도노동자는 생활급은 차치하고 당장의 호구를 위한 생존비에도 미치는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철도노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긴급동의로 생활급 확보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10월 17일 ‘생활급확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긴급노동협의회를 개최해 사전교섭을 취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 제기한 임금인상 요구를 철도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월 25일, 1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철도청의 반대로 인해 “단독으로 보수를 인상할 수 있는 제도 변경을 위한 기구 설치로 기구개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¹⁷⁶⁾ 이후 철도노조는 철도청과 수차례 비공식교섭에 나섰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인상요구에 대한 수락 여부를 12월 24일까지 통고해 줄 것을 철도청에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철도청은 “기본급여 인상 시기 및 수락 여부는 현재로서는 명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냉담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철도노조는

175)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 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174~175쪽.

176)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228쪽.

1963년 12월 26일 임금인상(5급 잡류 2호 10,000원 베이스) 요구를 내걸고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노조는 법정쟁각기가 만료되는 1월 26일이 다가오자 1월 22일 쟁의조정법 제12조에 의한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해 98%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에 철도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쟁의 해결에 나섰으나 교섭은 결렬되었다. 2월 3일에는 현업기관인 철도, 체신, 전매 등 3개 노조의 고위 간부와 비공식회의를 열고 노동청장이 100% 인상 요구에 대한 타협안으로 5% 내지 7%를 제안해 결렬되었다. 이어서 2월 7일 교통부 장관과 철도청장의 요청으로 조합대표와 비공식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7% 인상을 고수해 결렬되었다.

결국 철도노조는 2월 8일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극도로 긴박하게 돌아가자 당국은 다시 교섭을 요청해왔으며, 철도청과 철도노조 사이의 노사대표자회담을 통해 40% 선에서 최종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로써 약 5개월에 걸친 철도노조의 투쟁이 1964년 2월 19일 노사대표자의 협정조인으로 종결되었다.¹⁷⁷⁾

문서는 1964년 2월 19일 노사대표자가 조인한 협정 내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통부 장관이 제출한 것이며, 철도노조 쟁의를 종결짓기 위해 정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 대표인 철도청장 박형훈(朴亨勳)과 노동자대표인 철도노조 위원장 이규철(李奎喆)이 서명한 <임금인상에 관한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964년 1월 1일부터 기본임금(직책수당 포함)의 10%를 현업수당으로 소급 지급한다.
- ② 이후 정부 일반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따라 동액(同額)을 기본급으로 가급(加給)한다.
- ③ 전 1,2항에 같이 제시한 현업수당을 증급(增給)키 위한 방안을 갑, 을 쌍방은 이를 확인하고 갑은 그 실현을 위해 FY6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 제출한다.
- ④ 쟁의가 종결된 연후에 적용 범위, 적용 대상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177)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 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184~186쪽.

에서 정한다.

- ⑤ 철도공무원 단독신분법의 연내 실현을 위해 갑, 을 쌍방이 계속 노력한다.
- ⑥ 1964년 2월 7일자 임금인상에 대해 갑측이 제시한 처우개선방안 중 부대조건을 적기(適期) 실행한다.

전국 항만 하역 노무자 임금인상 노동쟁의 처리

총무처 / 1960 / BA0084256

1960년 12월 22일 보건사회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장에게 보낸 문서로, 전국 항만 하역노동자로 구성된 자유노동조합연맹의 쟁의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4월혁명 이후 대한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의 기존 집행부는 집권 자유당의 시너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사퇴했으며, 노동조합은 민주화 열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국 항만 하역 노무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자유연맹도 예외적이지는 않았다. 대한노총 위원장, 자유노동조합연맹(이하 자유연맹) 위원장, 부산부두노동조합 위원장 등 3개의 직함을 갖고 있던 김기옥이 사퇴했으며, 8월 7일 서울노동회관에서 전국 각 항 부두노조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편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자유연맹 위원장에 전병민(田炳旻), 부위원장에 노현섭(盧玄燮, 마산), 김판석(金判石, 여수), 이봉안(李鳳雁, 군산), 사무국장에 이춘희(李春熙, 부산)를 선출했다. 그리고 대회에서 현행 제반 노임이 생계유지에 부족하다는 공감 아래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¹⁷⁸⁾

대회 결의에 따라 새로 출범한 집행부는 임금인상 활동을 추진해 10월 12일 국회에 노임인상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사용자인 하역회사와 외자청에도 요구서를 제시했다. 자유연맹에서 제출한 임금인상 요구내역은 ① 석공 소관 석탄 하역작업 노임 22% ② 교통부 용품 하역작업 노임 38.8% ③ 국방부 소관 하역 노임 37.4% ④ 농림부 소관 정부관리 양곡 하역작업 노임 16.6% ⑤ 전매청 전매품 하역 노임 32.4% ⑥ 외자청 외자 하역 노임 35%, 9% 등이었다.¹⁷⁹⁾ 그러나 정부나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자유연맹은 10월 28일 노임인상쟁의를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12월 20일 법정 냉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노사 간에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연맹은 12월 21일 산

178) 全國航運勞動組合聯盟, 『荷役勞動運動史』 제1권,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2009, 307~308쪽.

179) 全國航運勞動組合聯盟, 『荷役勞動運動史』 제1권,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2009, 308쪽.

하 각 항구 부두노동조합에 12시간 시한부 파업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전 부두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의 항만은 마비상태가 되었다.

문서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자유연맹이 제1차로 12시간 파업에 들어간 다음날에 작성된 것이다. 보건사회부는 11월 25일 열린 정무회의에서 자유노조의 임금인상 쟁의를 보고했다. 그리고 12월 2일과 13일의 2차에 걸쳐 열린 부청(府廳) 실무자회의에서 “정부의 하물(荷物)을 조작(操作)하는 노동자가 각 항만에 서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현저한 저임금 상태”에 있으며, “정부하물 자체에도 주관부청에 따라 상호간 균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을 시인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① 정부 관계 각종 하물의 조작에 관한 노임 요율은 작업 단계별로 균일하도록 책정한다.
- ② 노임요율은 시간당 180환, 월당 4만 환을 평균 기준액으로 책정한다.
- ③ 전항에 의해 현행 노임에 비해 인상되어 소요되는 재정조치는 단기 429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고려기로 한다.
- ④ 근로자의 노동력 공급을 주점(主點)으로 하는 하역조작업무에 있어서 노임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부(附)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재정관계 법령을 시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건사회부의 노동쟁의 해결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행정당국에서 노임인상쟁의 해결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만은 틀림없다. 이것은 자유연맹이 해를 넘겨 1월 21일 오전 7시부터 72시간의 제2차 파업에 돌입했다는 사실로써 알 수가 있다. 제1차 12시간 파업에서 강도를 높여 제2차에서는 72시간 파업을 단행했는데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를 딛고 자유연맹은 사용자와 관계 당국자, 국회를 상대로 임금인상 교섭을 꾸준히 전개했지만 3월에 결정됐던 정부예산방침에 하역노임 인상은 반영되지 못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자유연맹은 3월 31일 오전 7시부터 재차 12시간 파업에 돌입했지만¹⁸⁰⁾ 이러한 실행행사를 통해 얻은 성과는 거의 없었다.

180) 全國航運勞動組合聯盟, 『荷役勞動運動史』 제1권,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2009, 311~312쪽.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쟁의 경과보고

총무처 / 1963 / BA0084373

1963년 7월 30일 보건사회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문서로, 한국노총의 쟁의 행위 돌입 거부투표 보류를 보고하면서 동시에 노동쟁의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1963년 7월 29일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정부측 약속에 기대걸고 쟁의투표의 일시 보류를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쟁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4월 노동관계법이 개정, 공포되기까지는 4월 혁명으로 고양되었던 노동운동이 군부세력의 억압에 의해 좌절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검거되었고, 노동조합은 해체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쟁의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군부세력에 의해 하향적으로 재조직된 한국노총이 존재했지만 노동조합 결성만이 허용되었을 뿐 단체교섭과 노동쟁의는 금지된 상태였다.

1963년 4월 이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했다. 이 시기 경제개발에 의한 임금노동자 증가를 배경으로 노동조합 조직세도 증가했으며, 군사정권 아래에서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다.¹⁸¹⁾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수통제법) 폐기투쟁도 그 중의 하나였다. 1963년 6월에 전국광산노동조합을 비롯해 정부관리 기업체 노동조합은 보수통제법의 폐기, 상여금 지급·퇴직금제도 개선, 기본 급료 인상과 수당 지급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했다.

문서는 보수통제법을 폐기하기 위한 쟁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군사정권은 1961년 9월 1일 보수통제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를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정부의 보수체계의 균일성을 기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 공포된 것이다.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고, 봉급과 수당의 균형을 위한 조정은 정

181)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142쪽.

부관리기업체의 종업원 수, 자산, 업무량과 성질 등을 참작해 각령으로 구분한 등급에 의해 행하도록 규정했다.¹⁸²⁾

1963년 7월 27일의 최고회의에서 보수통제법을 폐기하고 정부관리기업체 보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자 한국노총 쟁의지도위원회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권을 각령에서 보장할 것을 전제로 쟁의행위 돌입 가부투표를 보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동쟁의 제기 일자, 쟁의 참가 조합원 수, 쟁의 경위, 전망, 대책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쟁의 제기 일자: 1963.6.3.~6.7.
- 쟁의참가 조합원수: 약 45,000명
- 쟁의 경위:
 - ① 노동쟁의 요구의 초점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관한 보수통제법의 폐지에 있음
 - ② 한국노총은 노동쟁의 제기 후 즉시 쟁의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
 - ③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보수에 관한 법률안이 최고회의에 제안되자 7월 15일 쟁의지도위원회에서는 전체 대상 관리기업체 조합원에 대해 쟁의 행위 돌입의 가부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
 - ④ 7월 27일 법률안이 최고회의에서 통과되자 7월 28일 쟁의지도위원회에서는 퇴직금의 기득권을 각령에서 보장될 때까지 투표를 보류하기로 결의
- 전망: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을 각령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실시할 것이 예측됨
- 대책: 각령 제정에서 ① 퇴직금에 관한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할 것 ② 기업체 별로 전체 종업원에 지급되는 최소한의 특종(特種) 수당도 고려할 것

첨부된 문서는 퇴직금 산출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것, 퇴직금 기득권 보장이 규정되지 않은 점, 수당의 종류 등이 한국노총의 요구와 거리가 있어 쟁의투표 돌입을 결정했으나 보건사회부 장관이 퇴직금에 관한 규정과 제 수당의 신설

182) 「閣議서 俸給 等 決定. 管理企業 職員報酬制限法을 公布」, 『경향신문』 1961.9.3.

등 한국노총의 요구조건을 각령으로 반영 개선할 것을 확약함으로써 쟁의투표 실시를 일시 보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일 앞으로 사태 진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 쟁의 투표 일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쟁의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문서는 노동쟁의에 참가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노동조합원 수, 쟁의 당사자, 노동쟁의 일자를 상세히 보여준다. 노동쟁의에 참가한 정부관리기업체는 전국광산노조, 전국전력노조, 전국운수노조, 전국해상노조, 전국금융노조, 전국화학노조, 전국금속노조 등 7개 노조였으며, 쟁의 당사자는 대한중석, 대한석공, 대한철광, 한국제강, 한국전력,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국민은행, 서울은행, 충주비료, 호남비료, 인천중공업 등이었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 수가 45,000명에 이를 정도로 보수통제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컸다.

실상 보수통제법에 의해 광산, 전력, 운수, 금융, 해상, 금속, 화학 등 7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4만7천5백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는 봉급이 삭감되거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1962년 6월 9일 단행된 화폐개혁의 실패와 물가폭등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보수통제법은 1차적으로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어¹⁸³⁾ 1963년에 이르러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조합이 연합해 쟁의를 제기한 것이다.

183)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191~192쪽.

노동쟁의 발생 상황보고

총무처 / 1963 / BA0084396

1963년 12월 31일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부관리기업체를 비롯한 일반 업체의 노동쟁의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문서이다.

문서는 1963년 12월 석탄산업과 전력산업, 운수사업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노동쟁의가 전 기업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했다. 냉각기간이 만료되어 쟁의 행위에 돌입할 경우 국민경제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임금과 생계비 현황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노임 현황: 월평균 임금은 4,261원(최저 2,569원, 최고 13,766원)으로 평균임금인 4,261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7.6%에 해당하는 저임금 상태.
- 노동자의 생계비: 월 생계비는 5인 가족에 노동자 7,050원, 봉급자 14,200원 (1963.9 한국은행조사월보)

문서는 노동쟁의 발생 전망과 조정에 있어서의 애로점에 대해 첫째, 이번 쟁의는 민정이양을 계기로 어떤 중압감에서 벗어난 심리적 작용이 있으며, 둘째, 앙등한 물가에 비해 생계비 수입인 임금이 너무 저렴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노임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는 점차 전 기업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기업운영이 제반 경제문제와 아울러 그 운영의 저조로 말미암아 단순한 노동문제의 영역을 넘어 종합적인 경제시책에 의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당면 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관리기업체 운영의 합리화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의한 강력통제로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인 만큼 이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관리인 측이나 노동조합 측에 공연한 심리적 중압감을 부여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보수에 관한 법률은 폐지함이 타당함
- ② 중앙 및 지방 각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법 절차에 따라 쟁의의 알선, 조정, 중재를 행할 것인 바 노사 당사자 간에 평화적인 해결로 유도할 것
- ③ 정부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12월 3일자 제121회 각의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신속히 요율조정을 행할 것
- ④ 각 관계부처에서는 노동자의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문서는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수통제법)과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에 관한 법률>(이하 직원보수법률) 제정, 그리고 이에 반발한 정부관리 기업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63년 8월 7일 정부는 직원보수법률을 제정해 시행했다. 1963년 6월에 전국광산노동조합을 비롯해 정부관리 기업체 노동조합이 보수통제법의 폐기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쟁의를 제기하자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이를 대치할 법률로 직원보수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률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수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제4조(보수의 조정)에서 “①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는 그 기업체의 자산·업무량 및 종업원의 수와 수익상태를 감안해 각령으로 구분하는 등급에 의해 조정한다. 다만,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따로 각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등급별 봉급과 수당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관리기업체는 봉급과 수당을 제외하고는 직원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보수통제법과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조합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민정이양을 계기로 임금인상 및 제 수당 지급을 요구조건으로 쟁의를 제기했다. 5개 노동조합에서 15개 업체를 상대로 노동쟁의를 신고하게 되자 이를 접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즉시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해 적법 여부를 심의해 쟁의 제기 절차, 당사자 요건 등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당국에서도 “근로자와 기업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토록 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법 폐지안을 제안했다. 이리하여 1964년 2월 21일 국회에서는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내무위원장 대리 방일홍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에 대한 법률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들의 보수를 종합 조정할 목적 아래 제정”되었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기업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제정 이를 통제함으로써 신성한 근로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내지는 억제해 온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⁸⁴⁾

184) 국회사무처, 『국회 회의록』 제40회 제16호, 1964.2.21.

전국외기노조의 퇴직금 쟁의

외무부 / 1969 / DA0097725

전국외국기관노조의 퇴직금 쟁의 관련 문서로, 한미합동위원회에 퇴직금 쟁의를 회부한 날짜를 둘러싼 전국외국기관노조와 한미합동위원회 사이의 논쟁을 볼 수 있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이라는 까다로운 조건 아래에서의 전국외국기관노조의 노동쟁의 제기와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 후 7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실행행사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한미합동위원회 한국 대표와 미국 대표 사이의 문서와 외무부에서 노동청에 보낸 문서, 전국외국기관노조 위원장이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이의 제기 문서, 한미합동회의의 한국 대표가 전국외국기관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전국외국기관노조(이하 외기노조)의 퇴직금 쟁의를 둘러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로,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기노조의 역사, 외기노조의 한미행정협정 체결 운동, 한미행정협정의 노무 조항 내용, 1960년대 전반기부터 외기노조에서 전개한 퇴직금 쟁의 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기노조는 1961년 5·16 이후 군부세력에 의해 하향적으로 조직된 한국노총 산하기관이다. 한국노총은 결성 당시 14개의 산별노조를 그 산하에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1961년 8월 23일 조직된 외기노조이다. 외기노조는 마이어협정(1952.5.24.)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때문에 1953년에 제정·공포된 노동관계법이나 1963년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66년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체결 촉구운동을 전개했다.¹⁸⁵⁾

〈한미행정협정〉은 1966년 7월 9일 체결되고, 10월 14일 국회 비준을 거쳐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미행정협정 제17조 노무 조항은 고용주와 고용원 사이에 쟁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회부하며, 또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

185) 임송자,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역사』, 선인, 2016, 133~134쪽.

을 경우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여 한미합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나 법적 구속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한미행정협정의 노동조항에는 여러 가지 독소적인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① 군사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도록 한 점 ② 노동청 조정기간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 ③ 노동쟁의 문제가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된 후 70일을 냉각기간으로 설정했다는 점 ④ 노동자 대표를 한미합동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 ⑤ 한미합동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⑥ 숙사노동자를 미군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¹⁸⁶⁾

외기노조는 결성 이래 퇴직금 개선투쟁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원래 주한미군사령부는 1961년 5월 1일부터 해고수당제도를 시행했다. 해고수당제도는 감원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진해 사직한 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해고수당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영향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수당제도는 1961년 12월 4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되었다. 즉 종전의 해고수당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자 외기노조는 1962년부터 임금인상 요구안의 하나로 “퇴직금 제도의 소급 실시”를 주장했으며, 주한미군사령부에서도 해고수당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63년 3월 9일 미군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제도 실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이었다.¹⁸⁷⁾ 이에 외기노조는 1963년부터 꾸준히 퇴직금 개선운동을 펼쳤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1968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퇴직금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했다.

외기노조는 퇴직금과 임금인상 문제를 일괄해 미군 당국에 제시했는데, 1968년부터는 분리해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리하여 퇴직금 문제만을 협상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으며 7월 6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① 자원 해직자와 비자원 해직자를 차

186) 임송자,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역사』, 선인, 2016, 177~178쪽.

187)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외기노조 20년사』, 1981, 70쪽.

별하는 누진율을 일원화할 것 ② 취업일을 기산일로 산정할 것 ③ 징계 해고자에 대한 퇴직금 몰수제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퇴직금제도 개선요구서를 제출했다.¹⁸⁸⁾ 이러한 외기노조의 요구는 미군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외기노조는 한미행정협정 절차에 따라 8월 19일 노동청에 노동쟁의를 제기했다.¹⁸⁹⁾ 이날 미군 측에서는 ① 근속연수 13년까지는 현행율대로 하고 13년 이후부터는 비자원율을 1년에 0.5개월분 인하하고 자원율을 1년에 0.5개월분 인상한다 ② 1956년 4월 30일 이전 소급기산은 문서기록이 있는 것에 한해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징계해직자의 퇴직금 몰수제 폐지는 현재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외기노조에 대안(제1차 대안)을 제시했으나 외기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11월 30일 노동청에서 개최된 조정회의에서 미군 측은 외기노조에서 요구하는 퇴직금 일원화와 기산일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제1차 대안을 약간 수정해 제2차 대안을 제시했다. 제2차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원해직자의 퇴직금 누진율을 근속연수 5년부터 현행보다 0.5개월분씩 증액하며 11년부터는 1개월씩 증액한다. ② 비자원 해직자의 퇴직금 누진율은 근속연수 15년까지는 현행(35개월분)대로 하되 16년부터는 누진율을 1년에 0.5개월분을 삭감해 1년에 2.5개월분(현행 3개월분)으로 한다. ③ 징계 해고자에게는 한미합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군사요건에 배치되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1년에 1개월분을 지급한다. ④ 정년 퇴직자에 대해 특전을 마련한다. ⑤ 기산일은 인사기록이 있는 자에 한해 1954년 12월 1일 이전으로 소급한다.¹⁹⁰⁾ 이러한 제2차 대안을 외기노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청은 외기노조로부터 노동쟁의를 접수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외기노조와 미군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리하여 노동청은 1969년 6월 3일 퇴직금쟁의를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했다. 한미행정협정 발효 후 행정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가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된 첫 사례였다.

노동청에서 1969년 6월 3일 퇴직금쟁의를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했는데도¹⁹¹⁾ 1969년 8월 19일자로 한미합동회의에 회부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

188)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사업보고』 1969, 39쪽;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외기노조 20년사』, 1981, 202쪽.

189) 「외기노조 쟁의 돌입. 3만여 명 퇴직금제 개선 요구」, 『동아일보』 1968.8.19.; 「외기노조서 쟁의. 퇴직금제도 개선」, 『경향신문』 1968.8.19.

190) 임송자,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역사』, 선인, 2016, 200~201쪽.

191) 「외기노조 퇴직금쟁의 한미합동위 회부」, 『매일경제』 1969.6.9.

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왜 한미합동회의에 회부된 날짜를 8월 19일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노동쟁의가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했으며,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된 후 70일을 냉각기간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1969년 6월 3일 퇴직금쟁의가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된 후 70일의 조정기간이 만료되기까지 한미 양측 대표들은 공식적인 회합을 갖지 않았다. 즉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된 노동쟁의 문제를 한미 양국 대표들이 방치한 것이다. 8월 11일 냉각기간이 만료되자 외기노조는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중앙위원회를 열어 쟁의 대책을 수립하고 8월 26~27일 이틀 동안 쟁의 행위 가부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외기노조 산하 전 조직에 파업 가부투표를 지시했다. 이때부터 한미합동위원회 양국 대표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미합동위원회 양국 대표는 외기노조의 실력행사를 막기 위해 8월 19일자로 노동쟁의가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에는 <외기노조의 퇴직금 쟁의>라는 제목으로 ① 외기노조의 퇴직금 쟁의 내용 및 노동청의 조정 경위 ② 퇴직금 쟁의 합동위원회 회부와 관련된 외무부 조치 ③ 합동위원회 회부에 대한 협정 해석문제 ④ 미국 측 의견(1969.8.24. 스미스 중장 언명) 등을 정리한 것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를 보면, 외기노조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1968년 7월 22일 퇴직금 개선요구서를 제출하고 1968년 8월 2일까지 회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외기노조 측과 미군 측 사이의 협의는 무산되었고 외기노조는 1968년 8월 19일 노동청에 정식으로 조정을 의뢰했다.

노동청은 1968년 8월 16일 이후 수차에 걸쳐 퇴직금율에 관한 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했다. 1969년 5월 29일(공문 일자) 외무부에 합동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으며, 외무부는 1969년 6월 4일 노동청의 퇴직금 쟁의 한미합동위원회 회부를 의뢰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후 외기노조는 한미합동위원회에 8월 11일 이후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를 통보했으며, 한미합동위원회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70일이 기산되어야 함을 통보했다.

한미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는 외무부 구미국장 윤하정이었고, 미국 측 대표는 로버트 스미스였다. 이들은 70일의 조정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단 한 번도 공식회합을 갖

지 못했다. 이렇게 한미합동위원회로 회부된 문제를 방지한 것은 생소한 업무를 맡겨진 한미 양국 대표들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¹⁹²⁾ 외기노조가 파업 가부투표를 결정하자 그때서야 한미합동위원회 양국 대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8월 19일 한국대표 윤하정은 미국 측 대표 로버트 스미스에게 “쟁의를 8월 19일자로 한미합동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고, 로버트 스미스는 20일 “한국 대표의 통고에 동의하며, 따라서 70일간의 냉각 기간은 8월 19일부터 산정해 10월 28일에 만료된다”고 회신했다.

외무부 장관은 1969년 8월 20일 노동청장 앞으로 <전국 외기노조의 퇴직금쟁의>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 “귀청이 한미합동위원회 회부를 의뢰하신 전국외기노조의 퇴직금 쟁의문제는 별첨 사본과 같이 69.8.19. 노무분과위원회에 긴급 과제로 위촉할 것을 양측 대표가 합의하였음을 통보”하며, “동 일자(69.8.19.)를 SOFA 제17조 4항(가) (2) 및 (5)에 규정된 합동위원회 회부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미합동위원회 회부에 관한 절차 문제를 놓고 한미합동위원회 양국 대표와 외기노조 사이에 의견이 대립했다. 먼저 한미합동위원회 양국 대표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노동쟁의의 한미합동위원회 회부에 관한 절차문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법률적, 사실적 해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적 해석: (1) 노동청의 분쟁의 합동위원회 회부 의뢰는 합동위원회 회부를 위한 원인행위이며 그 자체가 합동위원회 회부가 아니다. (2) 합동위원회에 회부될 모든 문제는 양측 대표에 의해 회부되며 관계기관이 직접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방의 대표가 바로 합동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실제로 노동청의 공문 내용은 문맥상으로도 회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외무부에 의뢰한 것이며 공문 발송 자체가 합동위원회 회부가 아니다.
- 사실상의 해석: (1) 합동위원회가 한미 쌍방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고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관이기에 협정정신으로 보아서도 합동위원회 회부는 쌍방이 문제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어떤 문제가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었는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대표 상호간의 공식의 의사표시 또

192) 임송자,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역사』, 선인, 2016, 202쪽.

는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합동위원회 회부란 용어의 해석이나 이에 대한 절차상의 전례가 없었지만 문제가 한국 측 수석대표에 의해 미국 측 수석대표에게 제기되거나, 긴급과제로 분과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또는 합동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경우를 합동위원회 회부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합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상 당연하다.

이렇게 법률적, 사실적 해석을 하면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합동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으로 보아 동 위원회 상정이라 함은 어느 일방의 대표에 의해 정식으로 문제가 거론되고 상대방 대표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② 따라서 노동분쟁도 노동청의 원인행위에 의해 한국 측 대표가 문제를 상대방에 통고함으로써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즉 한국 측 대표에 의한 긴급과제 부여 요청 일자나 합동위원회 회의 상정 일자를 70일간의 기산일자로 해야 한다 ④ 한국 측 대표가 노동청으로부터 합동위원회 상정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합동위원회에 언제 회부할 것인가는 협정 규정의 해석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해 1969년 8월 24일 유엔군 부사령관 스미스 중장은 “1969년 8월 26일 07:00부터 8월 27일 18:00까지 실시한다는 외기노조의 파업결정 투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미국 측의 강력한 조치에 한국정부도 동일보조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외기노조는 1969년 8월 25일자로 항의문을 보냈다. 1969년 8월 25일 외기노조 위원장은 외무부 장관에게 <퇴직금 쟁의의 한미합동위원회 회부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서 외기노조는 한미합동위원회 한국 대표 윤하정이 “한미행정협정 제17조에 의거해 1969년 8월 19일자로서 한미합동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미국 대표 로버트 스미스 중장에게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스미스 중장은 위의 공문에서 한국 대표의 제의에 동의했으며 따라서 한미행정협정 조문에 의거해 한미합동위원회는 1969년 8월 19일부터 시작하는 7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는다는 뜻을 한국 대표에게 통보”했는데, 한국 대표와 미국 대표의 이와 같은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국 대표의 이러한 조치는 한미행정협정 제17조에 명백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가 되므로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퇴직금쟁의를 둘러싼 한미합동위원회 회부 날짜는 한미행정협정 제17조 4-가-(2)의 조문에 의해 노동청이 노동쟁의를 한미합동위원회에 접수

시킨 1969년 6월 3일이며, 따라서 한미합동위원회의 쟁의 조정기간인 70일 기간은 1969년 8월 11일로 만료된다고 주장하면서 1969년 8월 11일 이후부터는 한미행정협정 제17조 4-가-(5)(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규정된 제약을 전적으로 받지 않으며 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외기노조의 항의문서를 받은 한미합동위원회 한국 대표는 8월 27일 외기노조 위원장 앞으로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서 한국 대표는 “노동청으로부터 1969년 6월 4일 한미합동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뢰하는 공문을 접수한 후에 당부에서는 본건을 합동위원회에 회부함에 앞서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아국 측에 유리한 성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관계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추진방법에 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왔던 것”이며, “1969년 8월 13일에 비로소 종합적인 관계 자료를 접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검토한 후 1969년 8월 19일에 본건을 정식으로 한미합동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외기노조의 입장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파업 가부투표가 예정된 전날인 8월 25일 오후에 미군 측에서 9월 초까지 적절한 대안 제시를 제안했고, 이를 외기노조가 받아들이면서 투표는 연기되었다.¹⁹³⁾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한미합동위원회가 열렸으며,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1969년 10월 23일 최종 결정을 보게 되었다. 1968년 8월 19일 제기한 퇴직금 쟁의가 약 1년 2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 합동위원회 결정 내용은 외기노조의 요구사항 중에서 기산일자 소급 실시와 몰수제 폐지만을 수용하고, 자원 해직자와 비자원 해직자를 차별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퇴직금율을 조정하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자원 퇴직금율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외기노조에서 요구한 비율에는 미달하며, 비자원 퇴직금율은 기존 노동조건보다 저하되었다. 그러나 합동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 외기노조는 이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¹⁹⁴⁾

193) 「전국외기노조 쟁의 가부투표 연기」, 『동아일보』 1969.8.26.

194) 임송자,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역사』, 선인, 2016, 203~204쪽.

